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, 최재란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현행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은

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

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

현행 조례는 “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상위법은 입안권자의 비용 부담이 가능하지만

서울시 조례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.

- 이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의 경우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안전진단은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을 규제하기 위한

정부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.

그러나 한국의 공동 주택 구조 상

재건축은 선순환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음에

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재건축을 양성화하고

현실에 맞는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

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